조정이혼 절차와 조정조서 관계법령

[가사소송법] 제7조(본인 출석주의)

법률 제20432호 · 2026. 1. 1. 시행 · 제1항 발췌

① 가정법원,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,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,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가사소송법] 제50조(조정 전치주의)

법률 제20432호 · 2026. 1. 1. 시행

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가사소송법] 제59조(조정의 성립)

법률 제20432호 · 2026. 1. 1. 시행

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 제78조(준용규정)

법률 제21857호 · 2026. 10. 2. 시행

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